

생활기초편 / I. 재류관계

●주소가 정해진 후, 주민등록 하기●

중장기 체류자는 주소가 정해지면 14 일 이내에 재류카드(입국 후 재류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을 합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만 16 세 이상)

* 중장기 체류자란? *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 ① 「3 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
- ② 「단기체제」의 체류자격이 정해져 있는 분
- ③ 「외교」 또는 「공용(公用)」의 체류자격이 정해져 있는 분
- ④①부터 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해져 있는 분
- ⑤특별영주자
- ⑥체류자격이 없는 분

* 주민표란? *

주민의 이름이나 주소를 기록한 증빙서류로, 주민의 거주 관계를 증명한 것입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이나 주택 임대계약의 수속 등에서 주민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1 통 300 엔)

●이사하기●

* 시내에서 이사할 경우 *

이사 후, 14 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구청에서 수속을 해주십시오. 마이넘버 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재류카드와 함께 가지고 가지길 바랍니다.

* 센다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지금까지 거주하던 곳의 구청에서 이사하기 전에 수속을 합니다. 이사한 주소가 일본 국내인 경우 「전출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 후, 14 일 이내에 이사한 곳의 관공서에 가서 수속을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재류카드와 함께 가지고 가지길 바랍니다.

*집을 계약 하는 방법은 P10 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 이외의 일을 하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자격 외 활동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수속을 합니다. 단,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소지하신 분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

-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재류카드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자격 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고용계약서의 사본, 고용처의 업무안내 등)
- 신청자의 현재 체류활동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업무 내용이 쓰여 있는 재직 증명서 등)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 후, 재입국 하기●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서, 지금까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 출국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1 회 한정으로 유효한 것과, 허가 기간중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수차례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중으로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최대 5 년 (특별영주자는 6 년) 입니다.

【필요한 것】

- 재입국허가 신청서
- 여권
- 재류카드
- 수입인지 (1 회 한정 3000 엔, 수차례 유효 6000 엔)

「재입국 간주 허가(미나시 재입국 허가)」

중장기 체류자가 일본 국외로 나갈 때에 출국으로부터 1 년 이내 (특별영주자는 2 년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재입국 간주 허가 (미나시 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기한보다 체류기한이 빠를 경우,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해야만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체류자격 취소 수속 중인 사람
- ② 출국확인 유보대상인 사람
- ③ 수용문서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④ 난민인정 신청 또는 난민인정에 관련한 심사청구 중인 사람으로서, 활동이 지정된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

- ⑤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 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출입국 재류관리청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체류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평일 8:30-17:15 TEL : 0570-013904 (IP 전화, 해외에서의 전화 TEL : 03-5796-7112) (일, 영, 중, 한, 베트남, 네팔 외 11 개 언어)
센다이 출입국 재류관리국	〒983-0842 미야기노쿠 고린 1-3-20 (宮城野区五輪1-3-20) TEL : 022-256-6073 또는 022-256-6076 (일) Email : info-tokyo@i.moj.go.jp (일, 영) (이메일 문의에는 동경 출입국 재류관리국이 대응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 (증장기 체류자의 체류 관리 제도에 관한 수속)	https://www.moj.go.jp/isa/index.html (일, 영, 중, 한, 베트남, 네팔 외)
외국인 체류 지원센터 (FRESC, 후레스크)	평일 9:00-17:00 TEL : 0570-011000 (일, 영) (IP 전화, 해외에서의 전화 TEL : 03-5363-3013) https://www.moj.go.jp/isa/support/fresc/fresc01.html

●재류카드의 분실 / 도난시!●

①가까운 경찰서에 갑니다. 언제·어디서 분실, 도난 당했는지 등의 증명서(도난신고 수리증명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연락이 옵니다.

②증명서와 신고번호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③문제가 없다면 그 날 중으로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은 도난, 분실 사실을 알고 난 후, 14 일 이내에 수속을 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4cm×3cm) 1 장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제도 (사회보장·세금번호 제도)●

일본에서는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12 자리의 「마이 넘버(개인 번호)」가 주어집니다. 주민표가 있는 외국인(증장기 체류자와 특별 영주자 등)에게도 마이넘버는 배부됩니다. 마이 넘버는 「개인번호 통지서」에 기재되어, 주민표 등록 후에 등록한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마이넘버는 사회보장, 세금, 재해 대책의 행정 수속 등에 이용되며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제출하거나, 대학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마이넘버는 평생 변경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분실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말고, 소중하게 취급해 주십시오.

※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의 통지 후에 시정촌에 신청하면 신분 증명서로써,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 넘버 카드」가 교부됩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마이넘버가 기재되어 있고, 얼굴 사진이 있는 IC 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어 편리하게 생활합시다!](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mynumbercard.html)

<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mynumbercard.html>

(일본어 외의 다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